

아카이브와 기록학 전환을 위한 시론*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Archives System and Archival Science

이경용(Yi, Kyoung Yong)**

1. 머리말
2. 기록학의 지향과 과제
 - 1) 아카이브 체제의 해체와 재구성
 - 2) 기록학 연구방법론으로서 '역사기록' 연구
 - 3) 아키비스트 소양과 전문성
3. 아카이브와 기록학의 전환
 - 1) 아카이브 전환과 접근성 보장
 - 2) 기록학의 전환과 역사기록의 조직화, 그리고 공개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기록학회에서 발표했던 “아카이브와 기록학의 전환”(제1회 춘계학술대회, 현대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소명)과 “아카이브 상(像)?”(제2회 춘계학술대회, 시민사회와 아카이브) 원고를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이다.

** 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kyyi27@hnu.kr).

■ 투고일: 2024년 04월 01일 ■ 최초심사일: 2024년 04월 08일 ■ 최종확정일: 2024년 04월 15일.

■ 기록학연구 80, 167-196,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80.167>



〈초록〉

이 글은 기록학계의 현 국가아카이브 체제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 논의 검토를 통해 아카이브와 기록학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시민사회 ‘기록활동’ 사례를 ‘국가아카이브 기록현장’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현 아카이브 체제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사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학 연구방법론의 전환 필요성을, 아카이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록정보 조직화와 계층기술 등에 대한 인식 심화와 정책 전환의 의미와 관련지어서 도출해보았다.

주제어: 아카이브 체제, 기록학, 아카이브 체제의 재구성, 기록전문직, 기록정보의 조직화, 기술

〈Abstract〉

This article argued for the need for a transformation of archives system and archival science through a review of the archival circles' discussion of dismantling and reconstructing the current national archive system. By sharply contrasting the cases of civil society 'archiving activities' with the cases of 'national archive sites', we attempted to present solutions to the current archive system from a micro perspective. In this process, the need for a shift in archival research methodology centered on archival materials was derived in relation to the deepening of awareness of archival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hierarchical description to ensure archive accessibility and the meaning of policy shift.

Keywords: archive system, archival science, reconstructing of the archive system, archivist

1. 머리말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때로부터 어느덧 20여 년이 경과하였으며, 기록연구직이 국가아카이브와 중앙 부처에서 기록 활동을 시작한 지도 곧 20년을 맞이하게 된다. 참여정부 국가기록관리 혁신(‘2005년 체제’)의 성격과 한계를 적확하게 표현한 ‘미완의 혁신’(곽건홍, 2019, 49)이라는 말은 기록공동체가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함께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기 ‘대통령기록 유출’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과정에서 국가아카이브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작동하는 ‘기록 현상’을 목격하였다. ‘영포빌딩 사건’과 ‘캐비닛 문건’을 통해 국가 기록 법령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통령기록의 ‘기록 현장’도 체감하였다. 그리고, ‘기록관리 퇴행’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문재인 정부기 임용된 민간전문가를 정점으로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혁신’은 요청된 내용과 수준의 엄정함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흐지부지되었다.

한편, 기록학계는 기록관리 인프라와 법 제도적 측면에 한정되었던 연구 주제나 논의 방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기록 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기억 담론과 결부된 실천적 논의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종전의 국가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기록공동체가 제도적 또는 조직적 측면에서 국가아카이브 체계 중심으로 사고했다면, 지금은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기록 현상을 이해, 포괄하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계의 기록을 둘러싼 인식의 심화는 연구 주제에서도 사회적 기억과 실천, 일상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기록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아카이브 상(像)’을 상상하고 현재의 국가아카이브 체제의 ‘해체와 재구성’과 ‘대전환’ 논의(한국기록학회, 2020;

한국기록학회, 2021)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학계 논의는 국가아카이브의 조직 개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전의 논의들과는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기록공동체의 외연 확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기록관리 혁신’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지난 ‘기록관리 퇴행’의 문제를 기록공동체의 ‘주체적’ 측면에서 ‘반성’하면서(김익한, 2018) 시민사회, 역사, 행정(정부) 등 다양한 영역과 해당 분야의 관련 주체들과 ‘함께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전망한다. 또한, 2021년도 기록학회의 ‘대전환’ 논의로 이어지면서 현 아카이브 체제의 관리 영역을 훌쩍 넘어서 시민사회의 기록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새로운 ‘체제’(이념)를 지향하려는(이영남, 2021; 손동유, 2021) 문제의식이 보다 구체화되었다.¹⁾

그리고 이 글의 논지와 직결된 것으로, 학계에서 그동안 제기된 ‘해체와 재구성’ 개념을 수용해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도 ‘미시적’ 전환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했다는 점이다. 곧 기록학 연구방법론으로서 ‘역사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접근성을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국가아카이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록공동체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체제의 ‘해체와 재구성’을 전망하게 하는 ‘미시적 전략’으로(곽건홍, 2020)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기록학계는 연구방법론은 물론 연구 범위나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연구자 풀에 있어서도 여전히 ‘양적 성장’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 기반도 협소하다.(설문원, 2021) 학술지에 게재되는 많은 논문들이 여전히 기록관리 법적 측면에서의 관리 방법이나 기록관리 인프라

1) 이러한 점에서 2020년의 한국기록학계의 논의는 이전의 기록관리 혁신 논의와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방식, 영역, 주체 설정, 실현화 문제 등에서 전체적인 관점과 함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2021년의 학계 논의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체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실체로서의 ‘기록’이 전제되지 않은 채 ‘기승전 법제도 정비’나 ‘기승전 조직 확대’, ‘기승전 시스템 도입과 개발’로 이어지는 일정한 패턴마저 보인다. 학계 연구의 질적 수준 문제는 특히 국가아카이브의 주요 자산인 ‘역사기록(archives)’의²⁾ 내적 구성과 특성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록학(archival science)이 ‘역사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라는 점을 환기할 때, 역사기록의 내용적 검토는 물론 구조적 특성 규명과 기술(description)을 비롯한 기록정보의 조직화, 역사기록의 공개와 제공, 이와 관련된 아카이브만의 독자적인 정책 등을 다룬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자체가 기록학계의 학문적 토대의 부실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단순, 명료하다. 첫째,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전환이 밀접한 내적 관련성을 가진 것처럼 기록학 이론과 기록관리 방법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장, 심화될수록 기록 현장에서의 정책적 구상이나 실무적 대안 모색은 그 자체만으로도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이를 ‘시민사회 기록 활동’ 사례와 ‘국가아카이브 기록 현장’ 사례의 극명한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 곧 이 사례는 ‘동일한’ 기록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그 구조적 한계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록전문직들의 근본적인 아카이브 인식 전환을 촉구하게 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역사기록을 중심으로 설정한 기록학 연구방법론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역사기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아카이브 기록현장에서의 기록정보 조직화와 기술 등과 관련된 인식 심화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넷째, 이를 통해서 아카이브와 기록전문직의 존재 이유를

2)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는 ‘기록’, ‘(영구)보존기록’, ‘기록사료’, ‘역사기록’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기록’을 ‘분과학문으로서 역사학의 연구자료’라는 협의한 의미가 아닌,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역사 인식의 바탕이 되는 핵심 기록정보 자원’을 뜻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기록활동과³⁾ 아키비스트 정체성의 관련성을 고민해본다.

이 글은 2020년 제12회 기록인대회에서 한국기록학회의 발표 내용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가아카이브 재조직화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기 몇 차례의 토론회에서⁴⁾ 제기되었던 문제의식들을 승계하면서 보다 큰 틀 속에서 전개된 당시의 논의가 가지는 중요성이나 의미에 비해 기록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망각되어 가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기록학회는 2021년 동계학술대회에서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대전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였으나 학계의 공론장에서나 개별 연구에서도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2. 기록학의 지향과 과제

1) 아카이브 체제의 해체와 재구성

2020년의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에서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라는 제목의 한국기록학회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김익한, 곽건홍, 김득중)와 토론자(이영남, 손동유) 모두 20여 년 동안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실무적 경험을 기반으로 학계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발표 주제가 당시 기록혁신과 관련한 학계의 현안을 포괄하는 점도 그렇거니와 이러한

3) ‘기록활동’의 개념을 공공영역에서의 기록관리와 구분해서 “기록관리 시설 바깥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기록작업”에 대한 통칭으로 한정하기도 한다.(이영남, 2024. 125)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 논의와 관련해서 ‘탈시설적 기록실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록활동의 영역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현 아카이브 체제가 정치권력과 행정체계에 구조적으로 포획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국가아카이브 영역에서의 실천적 의미를 지닌 ‘기록활동’을 의식적으로 상정하고자 했다.

4) 대표적으로 2017년 국회에서 개최된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와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인적 구성은 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현재의 ‘국가아카이브 체제’(2005년 체제) 근간을 구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참여정부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실질적’ 주체였다.⁵⁾ 이 발표는 아카이브의 현 체제에 대해 ‘근원적 재구성’이라는 전복적 관점을 공유하면서 공론장에서 새로운 아카이브 체제를 대안적 관점에서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때 토론자로 참여했던 이들은 다음해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대전환”(한국기록학회, 2021)에서 각기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새시대’와 ‘학문과 실천의 대전환’이라는 발표를 통해 당시의 문제 의식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 글에서 2020년의 발표 내용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학계와 기록공동체가 맞닥뜨린 현재의 한계 상황의 원인을 ‘근대 국민국가 아카이브 체제의 무비판적 수용’에서 찾았다는 점이다.(김익한, 2020, 22-23) 곧 한국 아카이브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급속하게 ‘선진 사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1960~1970년대 유럽 지역에서 제기된 기록 실천주의로 표상되는 현대 기록학의 유의미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으며, 기능주의적 신젠킨슨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카이브의 내용에 천착하지 않는 형식주의적, 법제도 지상주의적 기록관리 문화의 주류화, 권력과 행정 관료주의에 복무하는 한국의 아카이브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현 아카이브 체제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현대 기록학 이론의 저변에서 찾고자 하는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기록 담론에 기반한 ‘현 체제의 전면적

5) 이들은 모두 역사학 소양을 가진 연구자이자 기록 활동가로,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해서 이들은 대통령실 기록혁신 추진체(자문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위원회 조직과 활동 지원, 대통령비서실 기록관 역할을 수행했던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의 기록관리 등에서 활약하였다. 그 ‘범위’와 추진 주체를 둘러싸고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관료 조직과 끊임없는 ‘대치와 날 선 공방 과정’ 속에서 자칫 표류될 수 있었던 기록관리 혁신의 기초를 유지,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다. 한국의 기록공동체는 이 지난한 과정에 대한 기억과 의미를 제대로 ‘복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심조차 없다.

해체와 재구축' 개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권력화, 제도화된 박제물로서의 아카이브 현상'의 극복 방향을 부분적 개선이 아닌 근원적 재구성 차원에서 전망하게 된 것이다.

한편, 행정 영역에 포획된 현 아카이브 체제에 대한 전복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행정기관의 필요에 대응하는 공문서 관리와 보존', '시민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아카이브'를 분리하여 사회적 기억을 담지할 수 있는 아카이브 체제로의 재구성을 제안하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공공기록기본법-행정사무기본법'으로 기록 영역을 분할, 해체 과정을 통해 아카이브 체제를 재구축한다는 구상이다.⁶⁾ 이 구상에 따르면 국가아카이브는 시민사회 아카이브에 대규모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 체제에서는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 영역의 일부 기록활동 '지원'에 머물러 있는 국가아카이브가 정부 활동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아카이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시민사회 영역의 기록화와 다양한 단위와 영역에서의 공동체 기록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가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 또한, 현 체제에 대한 전복적 사고는 '행정 아카이브와 시민사회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사회 개별 주체들의 각자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적 아카이브 체제로의 재구축"이라는 기록공동체의 지향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

6) 이 논의는 다음 해에 '국가기록관리법 체계의 근본 혁신', 곧 현 체제에서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중심의 절차법을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모두를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의 대전환'으로 구체화된다.(김익한, 2021, 10-12)

7) 국가아카이브와 지방아카이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 체제에서 지방아카이브의 인프라 구축 문제는 국가아카이브 정책 영역이 아니다. 지자체 단위의 고유 사무 이기에 국가 사무가 아니라는 인식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국가아카이브가 시민 영역과 지방아카이브의 인프라 구축과 기록활동 지원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는 모습을! 더 나아가 지방아카이브가 관할 지역의 다양한 아카이브 지원 활동을 '아카이브의 고유한 업무'로서 수행하는 모습을!

로 명명된 법제상에서의 국가아카이브의 지위와 역할은 현 행정체계 속에서 결코 현실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과 주장은 거시적 담론 영역에 위치하면서도 국가아카이브가 설정하고 있는 조직적(?) 현안 과제와 직결된 미시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기록학 연구방법론으로서 ‘역사기록’ 연구

기록공동체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거시적 관점과 그 결을 같이 하면서 학문적인 영역, 곧 기록학의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의 ‘미시적 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이다. 곧 ‘역사기록’을 주제로 설정한 기록학 방법론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와 연계한 국가아카이브 정책의 ‘미시 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곽건홍, 2020, 18-19) 발표자의 문제의식은 기록학계의 역사기록 자체에 대한 연구의 부재(또는 부족), 그리고 역사를 비롯한 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아카이브 현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곧 아카이브의 주요 고객(현대사 연구자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 연구자)에게 역사기록의 맥락 정보를 제대로 조직,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을 통해 국가아카이브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한 것이다. 사실 ‘2005년 체제’에서 역사기록에 대한 기록정보 서비스는 양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다. 기록정보 서비스 업무는 국가기록원 조직과 인력 확충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작 기록 정보의 조직과 기술을 전달할 조직과 인력의 축소, 소멸을 초래한 기록관리 ‘정책’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대량의 스캐닝 복제된 ‘원문정보’의 제공, ‘철-건’ 목록 위주의 ‘항목별’ 기록정보 제공이라는 ‘생산자 방식’의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아카이브의 주요 이용자인 역사 연구자 특히 현대사 연구자들의 아카이브 접근성 보장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아카이브의

‘시민권’ 획득을 방해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기록공동체는 국가아카이브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의 ‘아카이브 생태계’ 형성과 관련해서 보다 진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⁸⁾ 도서관, 박물관 등 여타 문화유산 기관들에 비해 출발이 늦고 기반도 약한 국가아카이브가 역사기록의 맥락 정보를 제대로 조직해내지 못하는 것은 곧바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문제로 인지되기 쉽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한정된 기록정보 제공은 다양한 분과학문 연구자들의 기록 활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의 접근성 자체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침묵(archival silence)’의 근본 원인이 된다.⁹⁾ ‘아카이브 침묵’은 주로 기록의 미생산과 은폐(폐기), 비공개 등 후진적인 정치 환경과 관련이 깊은데, 현대 아카이브에서는 편향적인 기록수집, 미숙한 기록평가, 기록의 정리 기술 문제 등 아카이브 제도와 기능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설문원, 2021, 248-257) 이제 한국의 국가아카이브와 기록전문직은 현대 사회에서의 존재 의의를 ‘아카이브 침묵’을 해방시키는 전문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

3) 아키비스트 소양과 전문성

기록공동체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기록전문직의 전문 역량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록

8) 아카이브 ‘생태계’와 관련된 포괄적 논의는 김장환(2024)의 논문을 참조할 것.

9) ‘아카이브 침묵(archival silence)’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보존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기록을 아카이브에서 이용할 수 없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설문원, 243) 국가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역사기록을 선별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억을 선택·통제함으로써 ‘침묵과 망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기에, 기록공동체는 국가아카이브가 당대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기록 인식과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직 역량은 역사기록의 수집과 생산 맥락의 보존, 그리고 기록정보 제공 등이다. 발표자의 정체성이 현대사 연구자와 기록학 연구자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에 따라 아카이브 업무와 기록전문직 역량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광건홍은 국가아카이브에 소장된 역사기록 대부분이 현대사 관련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 연구자를 위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특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가아카이브의 ‘업무 재배치’와 역사기록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아키비스트 양성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였다.(광건홍, 2020, 18-19) 이는 역사기록 정보 조직화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한 업무 재설계의(박종연, 2024.1) 다른 표현이다.¹⁰⁾ 또한, 학계의 ‘기록조사방법론과 역사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방법론 개발’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에서 역사기록에 일정한 이해와 해석 역량을 겸비한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의 신설이나 교육과정 개편도 제안한다. 기록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역사기록의 조사와 해석 능력, 기록정보의 조직화와 관련된 정리·기술 업무의 능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김익한은 기록전문직에 대해 ‘시민에 복무하는 아키비스트’ 소양을 우선시하면서, 주제 아키비스트로서의 세부적 전문성을 갖춘 ‘콘텐츠 컨텍스트 큐레이션’을 상정한다.(김익한, 2020, 23) 이때 ‘콘텐츠 컨텍스트 큐레이션’은 사회적 기억으로서 기록을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콘텐츠화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 체제에서 복무하는 기록전문직 소양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득중은 현대사 연구자의 관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역사기록 이용 문제를 바라보았다. 아카이브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유의미한 내용이 담긴 역사기록의 수집을 들었다. 그리고 생산 맥락을 알 수 없는 역사기

10) 역사기록의 해독과 해석이 가능한 현대사 연구자의 충원도 고려하였다. 국가아카이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현대사 관련 기록의 소장 기관들과 공동조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관련 기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카이브 허브로서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록은 역사 연구자의 해석을 방해하거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파편적이고 발췌적 성격의 역사 연구를 초래한다면서 역사기록을 이용할 때 생산 맥락의 보존과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의 온라인 기록정보 서비스와의 질적 차이를 언급하면서 국가아카이브 소장 역사기록의 생산 맥락 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김득중, 2020, 20-21) 또한, 그는 역사 연구자의 연구 수준과 내용은 온전히 역사 연구자 자신의 연구 태도와 방법론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가아카이브의 역사기록 정보 제공의 한계가 직접적으로 역사 연구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 연구자로서 김득중의 지적은 온라인을 통한 기록 이용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역사기록의 생산 맥락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기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단편적 사실만을 제공하게 만드는 아카이브의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2020년의 한국기록학회 논의는 기록과 기억 담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현 아카이브 체제의 해체와 재구축이라는 전망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기록학 연구방법론 전환의 필요성, ‘미시적 전략’으로서 국가아카이브의 정책 전환 필요성과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역사기록의 특성에 기반한 조사, 정리 기술’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재설계,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국사편찬위원회 등과의 아카이브 간 ‘실질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 등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해체와 재구성’을 전제로 한 국가아카이브 정책의 ‘미시적 전략’으로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국가아카이브의 정체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적 아키비스트 양성 제안은 역사학적 소양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아키비스트의 역할 다변화와 관련하여, 지금과 같이 분과 학문 간의 내용적 공유와 실질적 ‘학제’ 기반으로의 축적이 이루어

지지 않는 형식적 ‘협동과정’의 운영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요청된다.

3. 아카이브와 기록학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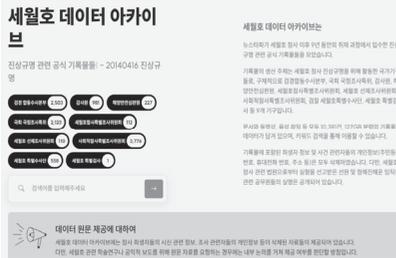
1) 아카이브 전환과 접근성 보장

앞에서 한국기록학회의 제12회 기록인대회에서 발표 내용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전환으로 구별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다른 차원이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카이브 체제로의 전환적 사고와 전망’에 토대한다는 점에서 내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곧 아카이브와 역사기록에 대한 관점(또는 인식)은 국가아카이브의 기록관리 방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인 역사기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 구상이나 이를 실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현 아카이브 체제에 대한 전복적 관점과 실천을 전망하게 된다. 실제로 역사기록에 대한 관점(또는 인식)의 공유 여부나 이해 정도에 따라 역사기록의 연구 방법론과 실무 적용에 대한 논의 또한 그 수준과 범위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 기록과 관련한 시민 사회 영역에서의 사례를 국가아카이브의 해당 소장기록에 대한 ‘기록정보 조직화 현황’과 연결 지어서 검토한다.

〈그림 1〉은 한국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동안의 취재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한 국가 기관(기구)들로부터 입수한 ‘공식 기록물’을 한데 모아서 제공하는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이미지이다.

〈그림 1〉 뉴스타파의 세월호 데이터 아카이브



출처: <https://sewol-fact.newstapa.org/archive>

〈그림 2〉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아카이브



출처: <https://socialdisasterscommission.co.kr/17>

검경합동수사본부(2014.4~2014.10) 2,503건, 감사원(2014.4~2014.10) 981건, 해양안전심판원(2014.4~2014.12) 227건, 국회 국정조사특위(2014.6~2014.8) 2,123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015.1~2016.6) 112건,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2017.3~2018.8) 110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018.12~2022.6) 3,776건,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2019.11~2021.1) 558건, 검찰 세월호 특별검사(2021.5~2021.8) 1건 등 9개 기관(기구)의 문서, 동영상, 음성 파일 등 모두 10,391건, 127GB 분량의 기록물을 제공한다.¹¹⁾

‘데이터 아카이브’는 참사 발생 이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된 기구(기관)의 활동기간, 활동의 주요 내용과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에 대한 간략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기관별로 기록 정보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기술한 ‘계층기술서’이다.

11) ‘데이터 아카이브’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진행형 아카이브이다. 추가적인 수집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5. 1~2016. 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는 국회의 특별법 발의에 따라 2015년 1월 1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활동 방해에 시달리던 끝에 2016년 6월 30일 사실상 강제해산됐습니다.

본 카테고리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중 생산된 내부 조사자료와 보고서, 회의록과 청문회 관련 자료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각 기관 활동의 특성에 따른 기록의 성격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전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목록을 클릭하면 PDF 열람이 가능하며, 내려받기와 파일 링크 생성(10분 유효) 기능을 통해 파일 복사도 가능하다. ‘학술연구나 공익적 보도’를 위해 원문자료를 요청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제공한다는 기록정보 제공 관련 ‘아카이브 공개 정책’도 표방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 정보와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림 2〉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지난 2022년 9월 6일, 3년 9개월 동안의 공식 활동을 종료한 뒤에도 클라우드 기반의 구글 드라이브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 운영되는 ‘아카이브’ 홈페이지 화면이다. 이 ‘아카이브’ 첫 화면에 “위원회 아카이브는 개별 조사결과보고서, 용역 보고서,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증거자료,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속기록, 종합보고서 본권 번역본 등을 위원회 청산 완료일(2022. 12월 중)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추측된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 유형별로 10개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주제별 기록 특성에 따라 하위에 ‘폴더-파일’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¹²⁾

〈표 1〉 사회적참사 특조위 ‘아카이브’의 기록 분류 및 간략 정보

주제	특이 사항
종합보고서(9건)	본권과 부속서, 부록, 번역본 등
백서(2건)	
조사결과보고서(81건)	관련 부처,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목록파일-71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증거자료철(12건)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가슴기살균제참사피해지원과의 증거자료 공개본 보고서
타임라인(2건)	가슴기살균제참사 사건지도, 세월호참사 사건지도
회의기록(279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전원위원회 속기록 공개본 (*안전목록 파일-373건의 회의운영)
용역산출물	사무처와 각 소위원회가 수행한 용역보고서 (*용역자료 목록파일-107개 용역수행)
사회적참사특조위 홈페이지 사회적참사특조위 SNS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 자료	홈페이지와 SNS 기록 재현과 복구에 대비한 백업 파일, URL 정보 등이 포함된 목록 파일, 데이터 추출 경로를 제공하는 파일 등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공식 활동이 종료된 이후 관련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완전 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식성’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활동과 기록을 생산한 국가기구로서의 주체가 ‘청산’된 뒤에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 ‘기록활동’은 기록의 출처와 관련한 풍부한 맥락 보존 차원에서 기록의

12) 용역산출물의 경우 가슴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사무처(자료기록단) 폴더 안에 각 연도별로 용역보고서가 최소 1건~최대 8건의 파일이 들어 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각 연도마다 실행한 조사용역의 특성에 따라 다계층(3~5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발주 용역산출물 폴더 하위의 4개 폴더 중 ‘참사 당시 세월호 영상 및 사진 분석’ 폴더-법영상분석연구소 최종 보고서 폴더-DVR인양과정 영상 분석 및 인양경위 설명 영상과의 동일성 분석 등 7개 폴더-단일 또는 복수의 파일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정리 기술 과정을 통해서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¹³⁾ 이 아카이브는 ‘데이터 아카이브’와는 달리, 위원회의 업무 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증거하는 기록 중에서도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증거자료,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속기록, 종합보고서 본권 번역본 등’ 이른바 ‘공개’ 기록만을 제공한다.

현재 국가기록포털에서 통합검색을 통해서 확인되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록은 모두 6,619철, 51,244건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외에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7,845건), 해양수산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추모사업지원단 등의 기록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부분 공개(33,036건)를 포함 42,597건이 공개, 8,627건이 비공개로 분류되었는데, 전체 기록은 현재 온라인 상으로는 열람할 수 없다. ‘비공개기록’의 ‘온라인 미제공’ 분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슴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대형 이슈 관련 기록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 전자기록으로 생산되고 이관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록이기에 스캐닝 작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지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뉴스타파의 데이터 아카이브의 1만 건 이상의 기록과 사회적참사 특조위 아카이브의 약 500여 건(최소 추정치)의 기록이 온라인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개되는 상황은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 제공 현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런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그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에 모두 22개의 ‘권고’를 부여했다. 국가기록원에 대해서

13)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015.1~2016.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2017.3~2018.8),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018.12~2022.6)의 3개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산물로 추측된다.

는 <21>과 <22>를 ‘권고’하였다.¹⁴⁾ <권고 21>은 정부 기관 등에 산재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신속한 폐기 금지 조치’ 실시와 향후 대형 참사 및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폐기 금지 조치’ 실시를 권고하였다. 이는 피해자 등의 권익 보호, 권리구제, 진상규명 조사, 재발 방지, 사회적 교훈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록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권고22>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같은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 기록에 대한 ‘공개·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제도 개선’ 실시를 권고한 것이다. 정보공개법 차원의 열람과 활용과는 다른 ‘참사와 재난 재발 방지 및 추모, 교육, 조사연구, 전시 등 후속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공개·활용과 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사회적참사 특조위, 2022.9, 116-117)

현재 국가기록원은 통합검색과 상세검색 기능에 의한 ‘기록철-건’ 중심의 기록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상세검색은 생산기관 검색, 키워드 검색, 주제별 검색 등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주제별 검색은 독립운동판결문, 국무회의록, 일제강점기 기록물 등의 특정 콘텐츠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고, 생산기관 검색은 각 기관의 하위조직의 기록을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점 외에 통합검색과 큰 차이점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사기록의 출처 정보로 매우 중요한 생산기관의 계층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0년대 중반 전후로는 기술계층별 검색이나 분야·유형별 검색을 위한 기록정보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아 특정 역사기록에 대한 생산맥락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2008~2022년에 걸쳐서 이용 수요가 많은 ‘세계

14) 「특별법」 제48조 4항에 의하면, 권고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권고내용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개전시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화추진위원회’ 등의 한시기관(폐지기관)에 한해서 기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권미현, 2022, 17) 이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 기록(14,340철)을 12개 계열로 분류하고 최상위의 ‘군 기술서’와 각 ‘계열 기술서’를 작성했다.¹⁵⁾ 하지만,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같이 최근까지 활동한 기관들의 경우, 여전히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나 계층별 기술(description)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현재의 국가아카이브가 ‘4·16 기억저장소’와 같이 기억교실과 기억전시관 활동을 통한 ‘관계성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까지(조민지, 이은화, 이영남, 267-316)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앞에서 사례로 든 ‘데이터 아카이브’처럼, 생산 출처에 대한 기본적 정보로서 활동 배경, 기간, 특징 등을 알 수 있는 계층기술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급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정보공개법 체제에서의 기록정보 제공 방식과는 다른 국가아카이브만의 기록정보 제공 업무를 적극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역사기록 정보화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을 축적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기록원은 ‘4·16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관들에게¹⁶⁾ 보유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는 한편 목록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관련 기관들의 기록 보유현황과 폐기목록을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제공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시키기 위함이었다.

15) 이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 조직화를 수행하는 부서 수준의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고 공유되어야 할 사례이다. 그러나 이용빈도면에서나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한시기관의 기록은 하위 계열과 철 단위까지는 기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대통령기록의 경우에서도 확인되었지만(이경용, 2021), 관련 기록 간의 연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기록의 전체적인 파악을 방해하는 것이다.

16) ‘4·16세월호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산업은행 등 25개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 및 공공기관이었다.

(국가기록원, 2018) 국가기록원은 공식 활동이 종료된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관련 기관들의 기록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사기록 정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뉴스탐사와 사회적참사 특조위 아카이브 사례와 같은 시민사회의 기록활동을 기록전문직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의 이 사례들이 국가아카이브 소장 '역사 기록'의 출처와 맥락 정보에 대한 조사수집과 보존, 기록 간 연관 정보 등의 기록정보 조직화를 확대하고 전향적인 공개 정책을 모색, 지향하게 할 수 있는 기록공동체의 소중한 기록 활동이라는 점이다.

2) 기록학의 전환과 역사기록의 조직화, 그리고 공개

역사기록의 정리 기술은 곧 기록정보의 조직화와 관련된 분야이다. 이는 역사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직결된 문제이며, 아카이브의 사회적 효용성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국가아카이브의 '철-건' 목록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기록정보 조직 업무는 외부용역으로 수행되는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에 토대한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아카이브의 역사기록에 대한 기록정보 조직 수준의 저급성 문제는 아카이브의 '전향적인' 공개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시의성을 상실한 '때늦은 공개', 상세 기술을 포함한 기록정보 조직 업무의 중지 또는 축소, 역사기록에 대한 아카이브 기관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미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면서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역사기록의 수집과 정리 기술 문제를 기록학의 거시평가 방법과 관련지어 살펴본다. 근현대사의 파행적 전개로 인해 우리 사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사건의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는 역사적 책임 소재 규명은 물론 사회구성의 계층, 이념, 지역, 세대 간 '화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다. 한스 봄스(Booms)의 당대의 사회적 과정을 증시하는 '기록화

계획’(documentation plan)이나 테리 쿡(Terry Cook)의 ‘거버넌스의 기록화’ 등 ‘기록의 사회표상론’까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거사’ 관련 기록은 공공과 시민 영역의 상호 작용이 포괄되는 ‘현재적 활용’을 전제로 하는 당대 사회의 중요한 기록화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기록정보 자원이다.

국가기록포털에서 검색한 결과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은 211,400건으로 관련 기관의 기록을 제외하면 모두 187,214건이다. ‘종합보고서’ 등 간행물 27건을 제외한 나머지 211,373건 모두 ‘온라인 미제공’으로 분류되었다. 일반문서 중 3,174건이, 녹음 동영상류 1,703건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의 회의 속기록은 물론, 심의 의결안 전원위원회 상정 계획 보고, 각 지역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등이 포함되었다. 비공개 분류의 심각성은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 기록에서 더 잘 드러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정부기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4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문제를 천명함에 따라 2005년 5월 27일 발족하였다. 강제징집녹화사업, 실미도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12.12, 5.17, 5.18사건, 보안사 민간인사찰사건, 신군부의 언론통제, 10.27 법난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모두 8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7년 11월 12일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의혹사건조사 발표를 마지막으로 조사활동을 마쳤으며 12월 3일 제90차 위원회를 끝으로 약 2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국가기록원 소장 진상규명위원회(2005~2007)의 기록은 모두 13,208건이며, 유형별로는 일반문서 8,722건, 사진필름류 4,062건, 녹음동영상류 445건, 정부간행물 1건이다. 이 중 2,857건이 비공개 기록이며(공개 1,587건, 부분공개 8,772건), 기록의 유형이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다. 진상규명위원회 기록 중에서 비공개되는 기록의 유형은 녹음동영상 기록(431건)이 가장 많으며, 3년에 걸친 위원회

활동의 핵심 기록인 “1차~90차 회의”(94건)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참고인 및 관련자 진술이나 면담 기록도 대부분도 비공개이다. 두 번째로 비공개 비율이 높은 기록은 사진필름(1,948건)으로 대부분이 피해자들의 부검 사진이다. 일반문서는 492건으로 상대적으로 비공개 기록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녹취록”이나 정례적 회의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 조사기록이며, 회의결과 역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군의문사 사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사건조사기록 외에 보도자료나, 종합보고서는 공개 가능하며, 인사명령기록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한자 영어

* 기록정보서비스 > 기술계층별검색 > 키워드검색 > 검색결과 > 계열기술정보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 > 기술정보 (archives.go.kr) (20230320, 09:31)

위원회 기록에는 사건 조사기록과 회의록(녹음기록과 녹취록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가기록원은 국제표준기록물기술규칙인 ISAD(G)를 적용하여 작성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술정보’에 다음과 같이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였다. 곧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 조사기록이며, 회의 결과 역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군의문사 사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1960년대~1980년대 남북분단 체제에서 비롯된 ‘안보 상황’을 빙자해서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했던 ‘과거사’에 대한 위원회 활동의 주요 기록을, 1960년대 중반에 제기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30년 공개’ 원칙(?)과 ‘현재 진행되는 군의문사 사건조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를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기록의 관리 방식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행정기록 조차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모두 231,145건으로, 일반문서 228,392건, 사진필름 399건, 녹음동영상 2,220건, 정부간행물 13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99%에 해당하는 231,001건이 비공개이며, 유형별로는 일반문서 228,388건과 녹음동영상 2,215건이다. 일반문서 비공개 기록에는 복무, 회계 등의 일반 행정 기록은 물론 “한일공동보고회자료집” 등 과거 일본제국주의 점령지역에서의 수집 자료,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과 관련한 심의 자료나 심사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녹음동영상 비공개 기록에는 국내외 노무동원과 관련한 구술자료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명부, 그리고 사할린 등에서 수집한 스캔 자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연구자들은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부록)”, “조사보고서” 등의 정부간행물(134건)을 통해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다.

4. 맺음말

전자기록 환경이 ‘전면화’되어 가면서 기록학 영역에서도 정보학이나 시스템 분야의 비중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아카이브 소장 ‘역사기록’을 연구 중심으로 설정해서 내용적 분석과 함께 구조적 특성에 토대한 기록정보의 조직화 방안, 그리고 이에 기반한 기록이용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기록학의 정체성 형성 측면이나 연구 방법론의 확장과 관

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록’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양적 측면에서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아카이브의 전문성이나 기록공동체의 외연 확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역사기록’(archives)과 현용기록(records) 관련 3편의 연구만을 간략 소개한다. 먼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생산한 기록을 검사국 사상부의 업무 활동과 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해당 기록이 각각 고려대학교 도서관(1960년대 초반)과 국사편찬위원회(1985년, 1996년)로 ‘분리 수집’된 맥락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정병욱, 2014) 기록의 ‘출처’와 관련된 이러한 맥락 정보는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경무 기록과 판결문 등 행정기록의 각 계층별 관련 기록정보 조직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역사기록의 정보화’ 의제화를 통해 소장 기관 간 공동서비스 정책 및 업무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 영역에 간혀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아카이브 역할 확대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전후보상’ 기록의 존재 양태 연구는(김경남, 2014) 식민지배 기록의 일부인 조선총독부 기록에 대한 인식을 시간적으로는 1952년까지, 공간적으로는 일본과 미국 등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¹⁷⁾ 기록학적 측면에서는 관련 기록을 생산한 기관들의 업무 기능과 활동을 ‘이중결제 구조’라는 업무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조선인미불금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증거 기록’을 추적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17)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의 강제동원 과정에서 발생한 ‘조선인미불금’ 문제를 일본 패전 직후부터 1952년까지 일본을 점령했던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약칭)와 일본정부의 업무 기능과 활동, 그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등으로 끌려간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연금 포함) 등이 당초 국가 간 ‘채무’로 인식되었다가 일본 국내법상의 ‘공탁’으로 처리된 과정을 밝혔다. 이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야 할 것이다.¹⁸⁾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TF’의 업무 활동과 그 증거로서의 ‘기록군’을 국가기록 관리에서의 ‘기록 생산 과정의 통제’ 관점에서 규명했던 연구도 있다.(이경용, 2019) 이 연구는 이른바 ‘체계적 기록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특정 ‘기록군’의 관리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하였다. 우선, 기록생산시스템에 의한 ‘기록 생산’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기록관리법의 통제를 벗어난 기록의 생산과 유통 등 공공 영역에서의 ‘기록 관행’ 존속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기 ‘적폐 청산’ 활동의 증거로서 활용된 중요 기록 ‘조차’ 등록하지 않아 ‘국가기록’으로 획득되지 못하는 기록 현장의 문제도 지적하였다. 이는 향후 국가아카이브의 ‘당대 사회 기록화’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기 범정부적으로 진행되었던 ‘적폐청산’ 관련 기록의 수집과 등록, 공개 등 당대의 기록화 정책과 실행에 대한 ‘연구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조명될 필요가 있다.

기록의 분류와 기술 등 기록정보의 조직화 문제는 아카이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고유한 전문 업무이다. 국가아카이브 소장 역사 기록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특성과 생산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검색 도구로서 기록 건에 대한 상세기술과 관련 기록의 논리적 재조직화가 필요하다.(곽건홍 2019, 2020, 2023; 이경용, 2022) 아직 대통령기록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역사기록에 대한 구체적 실증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참여정부의 지시사항 기록의 특징에 주목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와 기술 방안을 제안하거나(송민지, 2024), ‘영포빌딩 유출기록’의 생산 맥락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격과 전모 파악을 시도하

18) 이처럼,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기록군의 보존과 공동 활용의 문제는 당시의 조직 변천과 업무 기능의 변화에 따른 잔존 기록 확인과 매칭 등에 국한하지 않는다. 관련 기록의 미국 NARA 소장의 문제는 기록의 출처와 생산 맥락은 물론, 일본 제국 내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기록이 잔존 형태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역사기록을 둘러싼 기록학과 역사학, 사회학 등의 학제간 또는 국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고(위수아, 2024), 대통령기록의 특성과 맥락에 기반한 서비스 전략을 제시한(양인호, 2023, 2024) 연구들이 연달아 제출되었다. 기록학 연구방법론의 심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역사기록을 대상으로 그 특성과 구조 분석을 시도하는 이러한 연구 경향의 출현과 지속적인 성과 축적은 기록학의 정체성을 채워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현 아카이브 체제의 해체와 재구성 문제를 ‘미시적’ 측면에서 더욱 촉진하는 토양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려는 시점에 열람서비스 측면에서 ‘기록의 정리(등록)와 기술’ 등 기록정보의 조직화 문제가 역사기록 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포괄적으로 정리한 국가아카이브 기록현장에서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었다.(권미현, 2022, 2023) 이 보고서는 현재 국가아카이브 열람서비스 제공의 여러 문제들을 기록의 생산부터 정리(등록), 기록 정보의 조직화와 기술, 공개 등 기록관리 전 단계를 시야에 넣은 전체적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기록관리의 연속적 관점에서 생산기관(특히 한시기관)의 업무와 기록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록 정리(등록)와 공개 등 기록 이용과 관련된 기록관리 프로세스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전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공개재분류와 열람서비스 관련 기록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역사기록의 기록정보 조직화와 기술 등에 관한 기록전문직의 ‘기록활동 기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술서’에는 역사기록의 이용상 어려움을 ‘국가아카이브의 지속적인 비공개 관행’ 탓으로 보는 학계의 지적에 대한 ‘실무자로서의 변명’¹⁹⁾, 그리고 다년간의 기록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의 특성과 생산 맥락을 파악해서 어렵게 기록 이용에 제공할 수 있었던 ‘연구자로서의 자량’ 등이 담겨

19) 현 정보공개법 체제하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있다. 그런데, 필자에게 이 ‘기술서’는 역사기록의 이용과 관련하여, 열람서비스 업무에 대해 “기록물을 통한 인류에 실현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로 바라보는(권미현, 2022, 34) 기록전문직의 태도와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다.²⁰⁾ 기록학계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망과 이에 기반한 ‘미시적’ 전략과 실천이 분리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기록현장’에 대한 기록전문직의 이해와 관심 또한 국가아카이브 ‘기록 현장’에서의 ‘실무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기록 활동’ 모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²¹⁾

2008년~2009년의 기록연대기에서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수사사건’으로 아침 일찍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수사받는 말미에 “다 기록을 위한 일이고 수사가 잘 마무리되면 기록관리가 발전할 것”이라는 담당 검사의 확신에 찬 말을 듣고 나오면서 마주했던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의 새벽 풍경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아키비스트 K’의 기록기술지에는 절절한 자기 ‘고

20)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현재의 국가아카이브 구조와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등록 기록 확인, 등록 오류사항 수정 등과 관련해서, 캄스(CAMS)에서의 업무 권한 부여 문제나 5개 권역의 기록정보센터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의 미비 등과 ‘상대적’으로 소소한 문제 조차도 아카이브의 ‘전환적’ 정책을 전제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코 개별 기록전문직의 태도와 관점으로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연관된 업무 담당자 간 문제의식 공유와 관련 협의, 토론의 조직화 등 국가아카이브 기록전문직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기록활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회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 집단과의 협업적 네트워크 구성과 지속적인 연구 활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1)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화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국가기록원의 ‘실제적 기록활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일부 관련 부서의 매우 제한된 기록 수집과 지원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업무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진도와 안전 등지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 활동 ‘감시’ 활동에 ‘동원’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실무적 영역’에서의 문제점 인식과 대안 모색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 체제의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전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현 체제에 안주하는 이상 기록물법에서 규정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은 불가능하다. 국가아카이브 기록전문직들이 아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 지향을 소망한다면 ‘행자부 체제’로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기록 활동을 인식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백'이 담겨 있다.(이영남, 2016, 20-22) 국가아카이브 기록전문직들이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 아키비스트 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기록활동 '기술서'를 더 많이 제출해주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기록학 연구방법론으로서 역사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본격화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기록학계의 역사기록에 대한 '기술서' 내용이 더욱 충실해지고 축적되어서 현 아카이브 체제의 전복과 재구성을 기록공동체가 '함께' 전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아카이브 영역을 국가·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사업장'을 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록활동까지 확장, 인식할 수 있는 기록전문직들의 '아카이브 관점' 전환, 그리고 기록학계의 역사기록을 '주체'로 하는 기록학 연구방법론으로의 전환이 기록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키비스트 K'는 '아카이브의 영혼'을 찾는 여정에서 테리 쿡과 조우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혹시 아는가? 기록공동체가 지향하는 '아카이브 상(像)'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자 고립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미숙하고 어설픈 '아키비스트' 지망생들에게 휴머니즘과 아카이브의 영혼으로 안내해주는 '검은머리 테리 쿡'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지.

〈참고문헌〉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권고). 116-117.
- 곽건홍 (2019).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도서출판 선인.
- 곽건홍 (2020).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3, 37-70.
- 곽건홍 (2020). 기록관리에서 기록 혁신으로. 전국기록인대회자료집, 18-19.
- 곽건홍 (2023).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기록학연구, 75, 91-134.
- 권미현 (2022).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과정에서의 기록관리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페이퍼, 36.

- 권미현 (2023). 열람서비스를 통해 본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슈페이퍼, 40, 5-21.
- 김경남 (2014).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 기록학연구, 39, 281-318.
- 김득중 (2022). 현대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현실. 전국기록인대회자료집, 20-21.
- 김익한 (2018). 왜 다시 기록관리 혁신인가?: 소통, 기술, 협치를 향해. 기록학연구, 55, 165-208.
- 김익한 (2020). 아카이브 체제의 재구축을 위하여. 전국기록인대회자료집, 22-23.
- 김익한 (2021).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기록관리의 대전환. 한국기록학회 2021동계학술대회 자료집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대전환, 4-17.
- 김장환 (2024). 기록관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관한 단상. 기록학연구, 79, 83-120.
- 박종연 (2024).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과 쟁점. 기록학연구, 79, 205-230.
- 보도자료, “국가기록원,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 설문원 (2021). 침묵과 망각의 아카이브. 기록학의 지평, 245-284.
- 손동유 (2021).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새시대. 2021동계학술대회 자료집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대전환.
- 송민지 (2024). 참여정부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인호 (2023). 17대 대통령기록의 성격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78, 43-78.
- 양인호 (2024). 대통령기록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e지원시스템 생산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9, 231-270.
- 위수아 (2024). 이명박 대통령기록 연구: ‘영포빌딩’ 유출기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용 (2019).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위원회’ 기록 연구. 기록학연구, 60, 5-48.
- 이경용 (2022).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대통령 행사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1, 131-167.
- 이영남 (2016). 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기록학연구, 50, 5-60.
- 이영남 (2021). 학문과 실천의 대전환, 2021동계학술대회 자료집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대전환.
- 이영남 (2024). 헌법적 관점의 기록학. 기록학연구, 79, 121-168.
- 정병욱 (201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 ‘사상부’의 설치. 기록학연구, 40, 95-130.
- 조민지, 이은화, 이영남 (2020).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기록학연구, 66, 267-316.
- 한국기록학회 외. (2017).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국가토론회 자료집.

한국기록학회 외. (2017).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기록학회 외. (2020). 전국기록인대회자료집 코로나시대 기록관리의 변화와 과제.
한국기록학회 (2021). 2021동계학술대회 자료집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대전환.

〈참고 사이트〉

뉴스타파의 세월호 데이터 아카이브, 2024년 3월 22일 15:00-18:00 검색, <https://sewol-fact.newstapa.org/archive>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아카이브, 2024년 3월 22일 19:00-21:00 검색, <https://socialdisasterscommission.co.kr/17>

〈웹페이지 검색: 국가기록원홈페이지 검색〉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024년 3월 30일, 22:00-23:00 검색):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통합검색>검색결과 (archives.g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24년 3월 29일, 21:00-23:00 검색):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통합검색>검색결과 (archives.go.kr)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통합검색>검색결과 (archives.go.kr)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2024년 3월 30일, 23:00-23:30 검색):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통합검색>검색결과 (archives.go.kr)